의 안 번 호

2282

울신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5. 30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5. 30.(목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6. 17.(월)

2. 제안이유

○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작은도서 관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폐기자료의 주민 무상제공, 주민 포상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안 제1조(목적)
 -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근거법령 명시
- 나. 안 제4조(설비요건) 6석 이상의 열람석 설비요건 삭제
- 다. 안 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)
 -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며 심의사항 심의
 - 도서관 운영 및 발전, 자료의 교환, 이관, 폐기 및 제적사항
 - 공공도서관 위원회에서 기능 대행

- 라. 안 제13조(기증자료)제2항: 신설
 - 기증받은 도서가 적합하지 않을 때 개인, 단체, 기관 무상제공 가능
 - 폐기 또는 제적, 무상제공 사항은 위원회 심의 후 시행
- 마. 안 제14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) 제2항 및 제3항: 신설
 -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개인, 단체, 기관에 무상제공
- 바. 안 제14조의2(포상): 신설
 - 도서관 문화행사 등 참여 실적이 인정되는 구민, 시책추진에 공 로가 있는 주민,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음
- 사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
- 4. 근거법규 :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제3조, 제4조, 제5조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내용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작은도서관 진흥법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 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도서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·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.